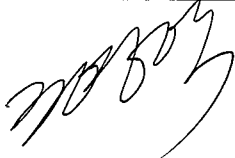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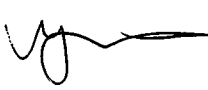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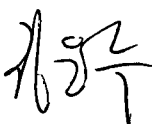


2018년 2/4분기 정기 노사협의회 회의록

회의일시	2018. 6. 26.(화) 14:00 ~ 15:30
회의장소	이사회 회의실(6층)
회의안건	(제1호) 주 52시간 관련 근무시간 운영방안

참 석 위 원 서 명	근로자 위원	서 명	사용자 위원	서 명
	노조위원장 곽 지 섭		이 사 장 조 영 탁	
	부위원장 류 형 우		기획본부장 유 석 태	
	총무국장 윤 여 준		경영지원처장 최 상 준	
	문화국장 허 성 일		계통운영처장 정 응 수	
	기획국장 김 장 근		총무노사팀장 박 기 현	

붙임 : 회의내용 요약 1부.

(붙임)

2018년 2/4분기 정기 노사협의회 회의내용 요약

제1호 (협의안건)

주 52시간 관련 근무시간 운영방안

- 회사측은 근로기준법 개정(1주 68시간 → 52시간)에 따라 연장근로를 최소화 하는 방안을 제시함. 일근근무자는 유연근무제 활용으로 연장근무 방지, 연장근무(1일 8시간, 1주 40시간 초과)가 불가피한 경우 연장근무 승인시스템 구축 및 운영 등의 방안을 제시함.

교대근무자의 경우 4조3교대 탄력적근무시간제 도입, 1주 대근 2회 초과인 경우 교육조 활용 등의 방안을 제시함. 관련하여 주 52시간 관련 연장근무 운영절차를 전 부서에 공지할 예정임.

- 근로자측은 금번 근로기준법 개정이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원칙적으로 환영함. 이를 계기로 전 직원의 업무는 원칙적으로 주 40시간 통상근무 시간 내에서 수행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업무 배분이 필요하고, 적절한 노동강도를 위해 경영관리 및 조직문화 개선이 필요함.

특히, 직원의 연장근무에 대해 근로기준법에 따른 추가 수당을 지급하고, 교대근무자 대근은 일근자가 아닌 동일한 교대근무자가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조 등의 최소한의 대체인력을 추가 편성·배치할 것을 요구함. 이를 포함하여 대표노조와 협의 및 동의를 위해 주 52시간 관련 근무시간 운영에 대한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하여 추가 보고해 줄 것을 요청함.

- 회사측은 근로자측의 실질적인 근무시간 감축 노력의 필요성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하고, 근무시간 단축을 위해 관리자 교육 및 감독 강화, 근무시간 단축 제도 정착을 위해 소프트한 방식과 하드한 방식을 병행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음. 또한 4조3교대 교대근무 탄력적근로시간제 도입은 직원과 회사가 모두 꼭 필요한 사항이므로 노조의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함.